



CHAPTER

# 1

## 마약류 개요 및 국내 마약류범죄 대응 현황

**제1절** 마약류의 정의

**제2절** 마약류의 종류

**제3절** 국내 마약류 범죄 처벌 규정

**제4절** 2023년 검찰의 마약류 범죄 대응

# 1 마약류의 정의

## 1 마약류<sup>1</sup>의 정의

- ▶ 마약(Narcotics)은 그리스어 *narkō*(to make numb, 감각을 없애는)에서 유래한 단어로 특정 약리 작용(정신 마비, 진통, 다행감, 탐닉)과 함께 의존과 남용을 유도하는 성질을 지니고,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각한 보건·사회적 폐해가 발생하는 약물을 의미함
- ▶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마약’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마약류의 한 종류에 해당하며, ‘마약류’가 정확한 용어임
- ▶ 세계보건기구(WHO)<sup>2</sup>는 ‘마약류’를 아래와 같이 정의함
  - ① 약물사용의 욕구가 강제에 이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 ②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 ③ 사용하다가 중단 시 온몸에 견디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나며(금단증상),
  - ④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
- ▶ 일반적으로 약리 특성에 따라 흥분제(각성제)와 억제제(진정·수면·마취제), 진통제, 환각제 등으로 분류됨

<sup>1</sup> 본 책에서는 법률적 근거에 따라 ‘마약류’로 통칭하는 것으로 한다

<sup>2</sup> WHO(1993) The ICD-10th Classification of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 Diagnostic criteria for research,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 2 마약류의 법적 분류

- ▶ 우리나라는 마약류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3종류로 분류함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그 원료물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2 마약류의 종류

## 1 마약

- ▶ 마약은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마약, 추출 알칼로이드, 이를 원료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으로 분류됨

[표 1-1] 마약의 분류

분류	품명	지정 성분 수	비고
천연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 잎	3	
추출 알칼로이드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코카인 등	35	일부 의료용 사용
합성마약	페티딘, 메타돈, 펜타닐 등	104	일부 의료용 사용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쉰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 (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룩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 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가. 양귀비

- ▶ 기원전 5,000년경 현재의 이라크 지역에 거주한 사람들이 돌에 양귀비에서 추출한 아편 관련 지식을 새겼던 것이 마약류에 관한 인류 최초의 기록으로, 그리스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4세기경 양귀비로부터 추출한 액체를 질병치료제로 사용하도록 권장함
- ▶ 양귀비라는 명칭은 그 꽃이 당나라 현종의 황후이며 그 시대 최고의 미인이었다는 양귀비에 비견할 정도로 아름답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함



※ 출처 : UNODC(좌) 및 The Times(우)

[그림 1-1] 양귀비

- ▶ 양귀비는 일명 ‘앵속’(opium poppy, 罌粟)이라 불리는 식물로서 여러 품종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금지하고 있는 식물은 파파베르 쉰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중 등 총 3종으로만 한정함
- ▶ 온대 및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앵속은 1년생 식물(1~1.5m)로 기원전 300년 경부터 지중해 연안에서 재배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황금의 초승달 지대(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이란 접경지역)를 중심으로 거의 전 세계적으로 재배됨
- ▶ 양귀비 열매에서 즙을 추출하여 이를 정제하여 고체로 만들면 아편(Opium)이 되는데, 국내에서의 양귀비 재배는 아편 추출을 통한 투약 목적보다는 주로 농어촌 및 산간지역에서 가정 상비약, 동물치료 목적이나 관상용으로 재배하고 있는 실정임

## 나. 아편

- ▶ 아편(Opium, 阿片)은 양귀비의 덜 익은 열매에서 채취되는 마약으로 제조방식에 따라 생아편, 의약용 아편, 흡연용 아편으로 구분됨
  - 생아편 : 덜 익은 양귀비의 열매에 낸 상처에서 유출되는 유액을 채집하고 이를 건조시켜 덩어리로 만든 것임, 정제되지 않은 시커먼 덩어리이며 모르핀 등 마약성 성분과 함께 수지(resin), 양귀비 껍질 조각 등이 함유되어 있어, 제약용으로써 합법적으로 생산되는 아편은 대부분 감기약용 코데인 합성에 사용됨
  - 의약용 아편(아편말) : 고체상태 아편의 모르핀 함유량을 10%로 조절하여 의료용으로 사용하며, 공식적으로 약전(의약품 제조서)에 기재되어있었으나, 현재는 삭제되었음
  - 흡연용 아편 : 생아편을 물에 녹여 농축하여 가열하면 아편 속의 모르핀 성분이 열분해되어 이를 액기스로 만든 것임, 옛날의 아편 중독자들은 특수한 전용 곰팡이에 한 덩어리 엮은 후 작은 호롱불로 기화해 흡연함

- ▶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아편의 탁월한 진통효과 때문에 열매와 식물체를 분리해 두었다가 응급 질환에 사용하기도 했으나, 19세기 아편전쟁(1840~1842년)을 치르면서 아편의 부작용을 몸소 체험한 중국은 1906년부터 아편의 재료가 되는 양귀비의 재배를 전면 금지함
- ▶ 주로 인도·터키·유고슬라비아·파키스탄에서 제조되며, 최근은 아편의 오남용에 의한 문제보다 화학처리하여 제조하는 헤로인, 크로코딜, 펜타닐이 더욱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 최초 한두 번 아편을 사용할 때에는 몽롱한 상태의 황홀감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남용하면 내성이 생겨 추후 심각한 중독 상태에 이르게 되며, 각종 부작용<sup>3</sup>을 경험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아편의 약효가 사라진 후 72시간이 지난 시점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출처 : KENSINGTON TV

[그림 1-2] 생아편

<sup>3</sup> 식욕과 성욕 상실, 메스꺼움, 구토, 변비, 동공 수축, 호흡 장애 등

- ▶ 헤로인은 ‘용감한, 강력한’이란 의미의 독일어 ‘Heroisch’에서 유래된 말로 1874년 최초로 합성되었으며, 1898년 독일 바이엘사가 진통제로 시판하였으나 심각한 중독성으로 인해 미국은 1924년 헤로인의 생산과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음
- ▶ 디아세틸모르핀(diacetylmorphine), 즉 헤로인(heroin)은 양귀비의 열매에서 채취한 생아편에 소석회, 물, 염화암모니아 등을 첨가하여 혼합, 침전, 여과, 가열의 과정을 거친 후 모르핀 염기에 무수초산, 황성탄, 염산, 에테르 등을 화학 처리하여 제조함
- ▶ 아세틸화합물인 헤로인은 냄새가 없는 백색, 연갈색, 암갈색의 분말로서, 긴장이나 분노, 공포를 억제하여 행복감과 도취감을 주는 중추신경 억제제의 일종임
- ▶ 모르핀을 원료로 하기에 일반적인 약리작용은 모르핀과 유사하나, 그 중독성은 모르핀의 10배에 달함



※ 출처 : 미국 DEA(Drugs of Abuse, A DEA Resource Guide)

[그림 1-3] 헤로인

## 다. 코카인

- ▶ 라틴아메리카에서 자생하는 코카나무 잎은 이전부터 원주민들의 기호품으로 활용되었으며, 19세기 코카나무가 유럽으로 유입된 이후, 코카잎의 효능을 연구하여 국소 마취제와 자양강장제 등으로 사용됨
- ▶ 1885년 독일 ‘Merck’사에서 상용화에 성공하여 널리 사용되었으며, 강력한 자양강장제 효과로 인해 와인 및 콜라에 코카인 성분을 추가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음
- ▶ 코카인은 약효가 빠르고 강력한 도취감을 일으키며, 흡입 또는 투약 시 벌레들이 피부를 기어다니는 느낌의 환각에 빠짐. 과다한 양을 흡입하면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불규칙해지며 열과 경련이 일어남. 보다 심할 때에는 호흡곤란으로 투약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 ▶ 남미의 일부 지역 사람들은 직접 코카잎을 씹거나 코카페이스트(반죽)를 흡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남용자들은 결정체 분말을 코로 들이마시거나 주사기로 투약함



※ 출처 : UNODC ※ 출처 : 미국 DEA

[그림 1-4] 코카나무 및 코카인

## 라. 크랙

- ▶ 코카인염에 탄산나트륨, 베이킹파우더 등을 섞어 가열한 후 냉각시켜 고체 상태로 제조함
- ▶ 크랙은 물에 녹지 않는 특성이 있어,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체들이 서로 부딪히며 딱딱(crack) 소리를 내는 것에서 이름이 유래됨
- ▶ 코카인보다 약효가 몇 배 강하고 중독성이 높으나, 저렴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미국 사회 전체에 널리 퍼짐
- ▶ 흡연할 경우 뇌의 도파민 분비량이 급작스럽게 올라가며 자신감과 고양감을 느끼는데 이 과정이 5~10분 정도로 매우 짧아 지속적으로 다른 흡연수단을 찾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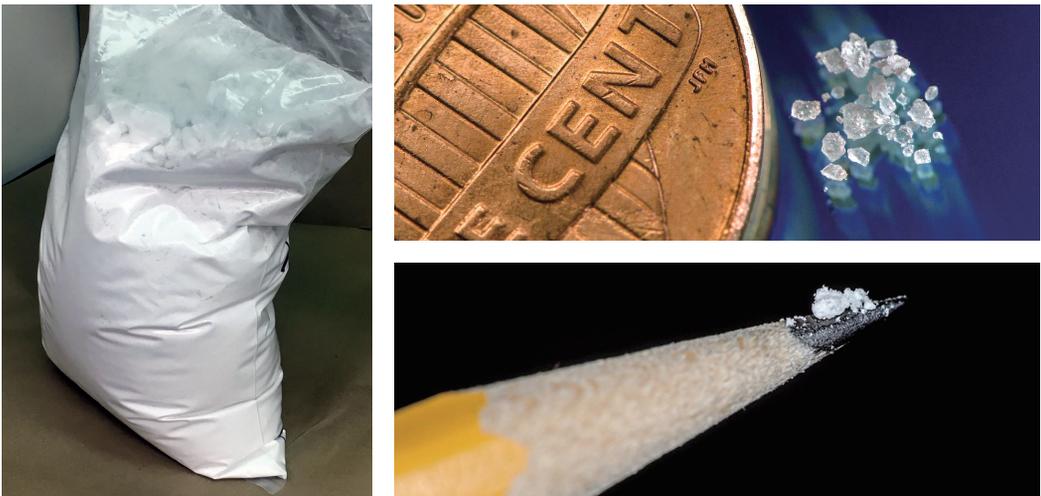


※ 출처 : 미국 DEA

[그림 1-5] 크랙

## 마. 펜타닐

- ▶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암 환자,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환자, 대형 수술 환자용 진통제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임. 그 위력은 모르핀의 약 200배, 헤로인의 약 100배에 달하며 완전치사량(LD100)도 2mg에 불과하여 극미량이라도 잘못 흡입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 현재 50세 이하 미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오피오이드(아편계 마약성 진통제, 주로 펜타닐) 오남용이며, 2022년 한 해 동안 약 7만 5천 여명이 펜타닐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미국에서 오남용되는 펜타닐은 FDA 승인 없이, 멕시코 카르텔 등에 의해 불법으로 제조되어 강렬한 효과를 내기 위해 정확한 함량을 지키지 않은 알약과 가루 형태의 제품들로 판매되며, 극소량<sup>4</sup>만 투약해도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음



※ 출처 : 미국 DEA

[그림 1-6] 펜타닐(파우더형, 좌), 펜타닐 치사량(우)

- ▶ 미국 법무부 마약단속청(DEA)에 따르면, 펜타닐은 제품 자체로 밀수되거나, 밀수된 원료 물질을 이용하여 펜타닐과 그 유사체를 제조하며, UNODC에 따르면, 대부분의 펜타닐이 중국의 불법 제조시설로부터 공급된 것으로 추정되며, 미국 내에서 소규모 제조시설 적발사례도 보고됨

<sup>4</sup> 2밀리그램("DEA Target fentanyl: A real threat to law enforcement", 미국 DEA자료)

## 2 향정신성의약품

▶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각성, 진통제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개발 및 사용되었으나, 투여 시 의존성 및 중독성이 있어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들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제대상 물질을 말함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표 1-3]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류

분류	품명	지정 성분 수	비고
가목	엘에스디(LSD), 메스케치논(Methcathinone) 및 그 유사체, 크라툼(Kratom),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 등	136	의료용 불사용,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나목	암페타민(Amphetamine), 메트암페타민 (Methamphetamine), 엠디엠에이(MDMA), 케타민(Ketamine) 등	44	매우 제한된 의료용 사용,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다목	바르비탈(Barbital), 리저작산 아미드(Lysergic acid amide), 펜타조신(Pentazocine) 등	61	의료용 사용,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 또는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라목	디아제팜(Diazepam), 플루라민(Fenfluramine), 졸피뎀(Zolpidem), 지에이치비(GHB),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 프로포폴(Propofol) 등	79	의료용 사용, 다목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 '가'목부터 환각효과 등의 약효가 강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가. 메트암페타민(법 제2조 제3호 나목)

- ▶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은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각성제)로서, 현재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며 일반적으로 '필로폰'이라고 불림
- ▶ 1888년 일본 도쿄대 나가이 나가요시가 천식치료제인 마황(麻黃)으로부터 에페드린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1893년 세계 최초로 합성에 성공함



※ 출처 : mfds.go.kr

[그림 1-기] 마황

- ▶ 메트암페타민은 일본의 제약회사가 ‘히로뽕’(영문상품명 Philopon)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판매하였는데, 잠을 쫓고 피로감을 없애주는 각성제로 판매하였고, 당시 상품명 ‘히로뽕’은 현재까지도 메트암페타민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한편 ‘Philopon’은 ‘일하는 것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Philoponos’에서 유래되었다고 함
- ▶ 각성제로 판매되던 메트암페타민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군수용품으로 대량 생산되어 군인 및 군수공장 노동자들의 피로회복과 전투의욕, 작업능력, 생산능력 제고수단 등으로 사용되었음
- ▶ 메트암페타민은 의존성이 매우 높아 빠르게 중독되고 중독된 사람은 극심한 금단증상을 겪으며, 투약 시 중추신경계가 파괴되어 다양한 증상의 합병증을 유발하고 과다 투약 시 사망에 이를 수 있음



※ 출처 : UNODC

[그림 1-8] 메트암페타민

- ▶ 메트암페타민은 국내에서 ‘히로뽕’, ‘필로폰’, ‘백색의 유혹’, ‘백색가루’로도 지칭되며, 미국에서는 결정체는 ‘ice’, 가루형태는 ‘speed’로 불리고, 중국에서는 ‘빙두’, 필리핀에서는 ‘사부(shabu)’, 대만에서는 ‘아미타민’ 등으로 불림. 최근 인터넷·SNS를 이용한 불법거래가 증가하면서 ‘뽕’, ‘가루’, ‘술’, ‘크리스탈’, ‘아이스’, ‘물건’ 또는 ‘총’ 등의 은어로도 지칭됨

## 나. MDMA(3,4-Methylene dioxy-methamphetamine)(법 제2조 제3호 나목)

- > MDMA는 1914년 독일 의약품회사에서 식욕감퇴제로 최초 개발됨. 강력한 환각성분으로 인한 뇌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기에 시중유통이 금지 되었음에도 1980년대 이후 환각제로 둔갑하여 세계적으로 남용됨
- > MDMA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표적인 환각성 향정신성의약품이며, ‘엑스터시(Ecstasy)’라는 명칭으로 더 잘 알려짐
- > 1980년대 유럽의 클럽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MDMA 복용 시 성욕이 증가하거나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격렬한 춤을 추게 되는데, 이러한 행동 때문에 국내에서는 ‘도리도리’나 ‘캔디’라는 은어로도 지칭됨
- > MDMA는 메트암페타민보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환각효과는 3배 가량 강하고, 주로 알약 형태로 섭취하며, 투약방법이 간편하여 많은 국가에서 오·남용되고 있음



※ 출처 : 미국 DEA

[그림 1-9] MDMA

- > 복용 시 신체 접촉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포옹마약(hug drug)’으로 불릴 뿐만 아니라, 복용 후 20~60분 정도 경과하면 입이 마르고 동공이 확대되는 등 극도의 흥분감을 일으키며, 3~4시간 약효가 지속되고, 과다 복용 시 불안, 초조, 환각, 환청, 구토, 혈압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한편, 심할 경우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기도 함

#### 다. LSD(법 제2조 제3호 가목)

- ▶ 엘에스디(LSD, lysergic acid diethylamide)는 1938년 스위스 화학자 앨버트 호프만 (Albert Hofmann)이 호밀 이삭에서 발생하는 맥각병에서 착안하여 최초 합성한 환각제로, 무색무취의 백색 분말형태임
- ▶ 1960년대 반문화운동시기에 많이 남용되었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많이 확산되었으며, 주로 우표 같은 형태의 종이에 인쇄하여 이를 혀로 핥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알약 형태로 유통되기도 함
- ▶ 소량의 경구투여로도 효과가 나타날 만큼 효과가 매우 강력하고, 환각효과는 메트 암페타민(필로폰)의 약 300배에 달하며 8~12시간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 투약 시 오감을 왜곡시키는 환각효과를 경험하게 되고, 공포, 불안, 두려움 등의 환각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투약으로 인한 뇌손상, 혈압 상승, 수전증 등의 부작용이 여러 사례 보고된 바 있음



※ 출처 : 미국 DEA

[그림 1-10] LSD

## 라. 합성대마(Synthetic Cannabinoids)(법 제2조 제3호 가목)

- ▶ 화학물질들을 인공적으로 합성하여 강력한 환각 효과를 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건조된 식물의 잎에 흡착시켜 마치 대마초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며, 연기를 흡연하거나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제작하여 흡연하는 방식 또한 대마초 흡연 방식과 유사하나, 천연 마약류인 대마의 주성분인 THC(tetrahydrocannabinol)<sup>5</sup>와는 화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마약류임



※ 출처 : [blog.employersolutions.com](http://blog.employersolutions.com)

[그림 1-11] JWH-018, HU-210, CP-47497

- ▶ 가격이 저렴하고 환각효과가 강력하며, 투약 방식이 쉬워 젊은 층을 사이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음
- ▶ 2009년 마약류로 최초 지정되어 총 6개의 물질이 관리되고 있으며 화학물질 외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유사체 또한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음

<sup>5</sup> 대마초에 들어 있는 환각성분으로, 화학명칭은 델타나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delta-9 tetrahydrocannabinol)이며 약칭으로 'THC'라고 함

[표 1-5] 합성대마의 종류

연번	품명	비고
33	JWH-018 및 그 유사체	JWH-018: 1-naphthyl(1-pentyl-1H-indol-3-yl)methanone
34	JWH-030 및 그 유사체	JWH-030: 1-naphthyl(1-pentyl-1H-pyrrol-3-yl)methanone
35	JWH-175 및 그 유사체	JWH-175: 3-(1-naphthylmethyl)-1-pentyl-1H-indole
36	JWH-176 및 그 유사체	JWH-176: 1-[(Z)-(3-pentyl-1H-inden-1-ylidene)methyl]naphthalene
37	HU-210	9-(hydroxymethyl)-6,6-dimethyl-3-(2-methyl-2-octanyl)-6a,7,10,10a-tetrahydro-6H-benzo[c]chromen-1-ol
38	CP-47497 및 그 유사체	CP-47497: 2-[[1S,3R)-3-hydroxycyclohexyl]-5-(2-methyl-2-octanyl)phenol

- ▶ 합성대마는 건조된 식물의 잎에 흡착시킨 후 비닐봉지에 1~10g씩 포장된 상태로 판매되는데, 그 환각효과는 대마에서 환각효과를 유발하는 THC 대비 몇 배는 강력하며, 불소 성분 함유로 불쾌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젖은 빵, 말린 과일 등에 넣어 복용하거나 허브와 섞어 흡연함

#### 마. 케타민(Ketamine)(법 제2조 제3호 나목)

- ▶ 케타민은 임상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로 사용되고, 오남용 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과 금단증상을 일으킴. 유흥업소나 클럽에서 ‘데이트 강간 약물(date-rape drug)’로 불림
- ▶ 정맥이나 근육 주사, 흡연 또는 흡입하면 자신의 신체에서 벗어나는 듯한 강력한 환각 효과가 나타나고, 맥박과 혈압상승, 호흡장애, 심장마비의 부작용을 일으킴



※ 출처 : 미국 DEA

[그림 1-12] 케타민

## 바. 야바(YABA)(법 제2조 제3호 나목)

- ▶ 야바는 1938년 독일에서 ‘Temmler Werke GmbH’가 ‘Pervitin’이라는 제품명으로 최초 개발하여 시판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중 각성효과를 이용한 전투력 증대를 위해 독일군에 보급되기도 하였으며, 이후 1970년대에 야바 제조방법이 태국에 알려지게 됨
- ▶ 야바는 메트암페타민(30%), 카페인(60%), 코데인(10%) 등 각종 환각성분을 혼합하여 정제나 캡슐형태로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임
- ▶ 일반적인 필로폰과는 달리 노란색이나 붉은색을 띄어, 정제나 캡슐형태로 포장되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위장하기 용이함
- ▶ 여러 환각물질이 복합 작용하여 환각효과가 매우 강력하고, 복용 시 도파민을 과도하게 생성하여 격한 흥분을 느끼며 신경조직이 파괴되고 탈수 증세와 함께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함. 도취감, 흥분감, 공격성, 우울증 등을 일으키며, 수일간 다량 복용하면 정신착란, 공포, 환각 증세를 일으킴



※ 출처 : clickitfaq.com

[그림 1-13] 야바

## 사. GHB(Gamma Hydroxy Butyrate)(법 제2조 제3호 라목)

- ▶ GHB는 속칭 ‘물뽕’, ‘데이트 강간 약물(date-rape drug)’ 등으로 불리며, 클럽 등지에서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음
- ▶ 1960년에 GABA의 유사화합물을 찾던 프랑스 생화학자 H.M. Laborit에 의해 최초로 합성되어 이후 유럽에서 발작성 수면을 치료하기 위한 수면 보조제나 수술용 마취제로서 소개되었으나, 마취제로서의 효능저하 및 예측 불가능한 마취 지속시간 때문에 시장에서 사라짐
- ▶ 미국에서 GHB는 건강식품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었던 약물로 보디빌더들 사이에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대체제(체중 조절 등 목적으로 사용)로 굉장히 인기가 높아, MDMA, 술과 함께 파티용으로 많이 사용하였고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1990년대 후반 미국 FDA에서 금지 약물로 지정함
- ▶ 백색분말 또는 액체의 형태로 소다수 등 음료에 몇 방울을 희석하여 복용하면 10~15분 이내에 약물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3~4시간 지속되고, 남용하면 혼수상태나 발작을 일으킴. 12시간 이내에 인체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후 추적이 어려움



※ 출처 : 미국 DEA

[그림 1-14] GHB

### 3 대마

- ▶ 대마는 칸나비스 속(屬) 일년생 식물로 중국, 인도, 북아프리카, 중남미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 세기 전부터 섬유 원료, 천식이나 두통 등의 치료약물로 재배되어 왔음. 우리나라에서는 고대로부터 섬유용으로 널리 재배해왔음



※ 출처 : UNODC, 미국 DEA

[그림 1-15] 대마

- ▶ 대마초의 원료가 되는 대마는 ‘삼(hemp)’이라고도 하며 재배 역사가 오래된 식물임. 대마 줄기의 섬유는 삼베나 그물을 짜는 원료로 쓰이고, 열매는 향신료나 한방 약재로, 종자는 조미료용이나 채유용으로, 그리고 잎과 꽃은 흡연용, 즉 대마초로 사용되어 왔음
- ▶ 대마는 중앙아시아의 파미르고원이 그 원산지이며, 본래 섬유용으로 재배되었으나 오래 전부터 도취를 유발하는 물질로 남용되어 왔음
- ▶ 대마의 약효에 대하여는 B.C. 2737년 중국의 신농(神農)황제 때의 기록에도 등장하는데, 중국에서는 말라리아, 류머티즘, 각기병, 변비 등의 치료약물과 섬유 원료로 사용되었음
- ▶ 우리나라에서는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0년대 이후 흡연용 대마초가 널리 전파됨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 가. 대마초(大麻草)

- ▶ 대마초는 대마의 잎과 꽃대 윗부분을 건조하여 담배형태로 만든 것으로, 학명은 영어표현으로 ‘마리화나(Marijuana)’인데, 전 세계적으로 주로 ‘마리화나’라고 함
- ▶ 재배삼의 암그루 꽃이삭과 잎에서 얻은 것을 ‘간자(ganja)’, 야생삼에서 얻은 것을 ‘마리화나(marijuana)’ 또는 ‘브항(bhang)’이라고 함. 한편 마리화나는 포르투갈어의 ‘mariguango(취하게 만드는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함



※ 출처 : 미국 DEA

[그림 1-16] 대마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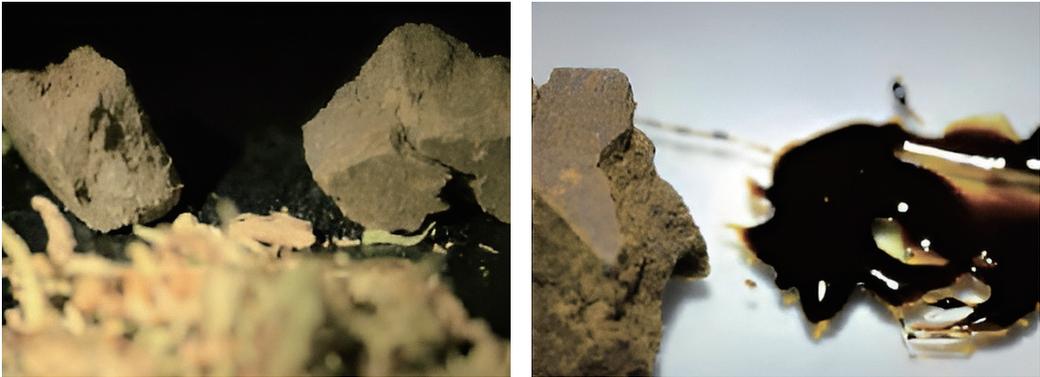
- ▶ 씨앗 생성 시기에 비교적 풍부하게 생성되는 ‘THC (tetrahydro cannabinol)’라는 물질 때문에 흡연 시 도취, 환각상태에 이르게 됨
- ▶ 흥분과 억제 작용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환각제로 분류됨. 적은 양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초조감, 풍족감, 이완감을 수반한 꿈꾸는 듯한 느낌이나 공복감 등을 일으키고, 시각·후각·촉각·미각 등의 감각을 오묘하게 변화시킴
- ▶ 남용할 경우 공중에 뜨는 느낌과 함께 빠른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집중력과 자아의 상실감, 환각·환청 등을 일으킴. 이러한 증상은 제3자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함
- ▶ 대마 남용의 위험성은 환각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대마보다 약효가 강력한 다른 마약류를 찾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음
- ▶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와 캐나다, 태국의 기호용 대마 합법화 영향 등으로 대마 카트리지,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대마를 상품화한 제품의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음



[그림 1-17] 대마 카트리지, 대마 초콜릿, 대마 껌, CBD오일, 대마 젤리

## 나. 해시시(Hashish)

- ▶ 대마초로부터 채취한 대마수지를 건조 후 압착<sup>6</sup>시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조한 것으로, 갈색·연갈색·암갈색·흑색 등 덩어리의 형태이며, 약 10%의 THC를 함유하여 대마초보다 8배~10배가량 작용성이 강함
- ▶ 대마수지의 지속적인 남용은 정신건강 및 내분비 기능의 장애, 면역능력 감소 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병을 초래하기도 함
- ▶ 해시시 가공 제품 중 오일(Hashish Oil)은 증류공정 등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고도로 대마를 농축하여 추출되기 때문에 THC 함량이 약 20%에 이름



※ 출처 : UNODC

[그림 1-18] 해시시

## 4 임시마약류

- ▶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응으로 남용되어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통제하는 물질을 말함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물질 등”이라 한다)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마약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1군 임시마약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2.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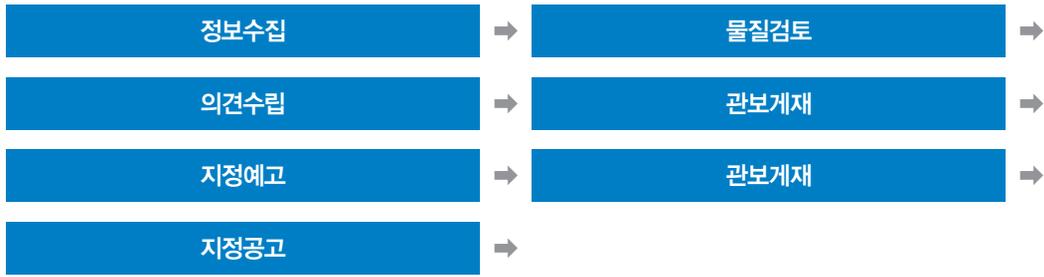
- ▶ 관련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표 1-6] 임시마약류의 분류(‘23. 12. 23. 기준)<sup>7</sup>

분류	물질명	지정 성분수	비고
1군	2,3-DCPP, Norfludiazepam 등	14	주로 오피오이드 계열
2군	alkyl nitrite, 1P-LSD 등	78	주로 암페타민, 합성대마 계열

- ▶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소관 업무이며,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아래의 행위가 모두 금지됨
  -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 \*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 승인을 받아야함

<sup>7</sup>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은 ‘지정 공고한 날부터 3년’이고,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로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임시마약류는 수시로 지정 예고 및 공고되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 공고)에서 최근 공고문 확인 필요



[그림 1-19] 임시 마약류 지정절차

## 5 원료물질

6.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표 1-7] 원료물질 및 최대 거래량

분류	물질명	지정 성분수	비고
1군	에페드린, 무주초산 등	30	14종 최대거래량 지정
2군	안트라닐산, 염산 등	7	5종 최대거래량 지정

※ 최대거래량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은 거래마다 거래량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야함

# 3 국내 마약류 범죄 처벌 규정

## 1 현행법상 처벌 규정

[표 1-8] 마약류 범죄 처벌 법령

구분	법 규	행 위	처벌 조항	형 량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일반 행위의 금지 등	제8장 벌칙 제58조~제68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불법수익의 은닉·가장, 불법수익의 수수, 마약류 물품의 수입, 선동 등	제3장 벌칙 제6조~제18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등(벌금 병과)
	형법 <sup>8</sup>	아편 등의 제조, 아편흡식기의 제조,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아편 흡식 및 동장소 제공 등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98조~제206조	10년 이하 징역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제4호, 제6호, 제7호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 제59조 제1항~제3항, 제60조에 규정된 죄	제11조 【마약사범등의 가중처벌】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등

<sup>8</sup> 특별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우선의 원칙에 따라 사문화

##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 우리나라는 기존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던 마약류 관련 법률을 통합, 2000년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동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구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주 내용은 ①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②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 취급의 제한, ③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④마약류의 관리, ⑤마약류취급자의 의무, ⑥마약류중독자 관리, ⑦이를 위반한 자의 처벌이며,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으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함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 라.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 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 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 3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방지법)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를 목적으로 체결된 국제협약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국내 법령 정비를 위해 1995년 제정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마약류의 수입·수출·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제6조(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4호(상습범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한 자(이들 행위와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併科)한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마약은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2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이들 행위와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①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마약류로 인한 불법수익 은닉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이를 몰수함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 소재(所在), 출처 또는 귀속(歸屬)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假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불법수익등의 수수)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당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불법수익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산림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법률로 1966년 제정되었으며, 이 중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조항은 제 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에 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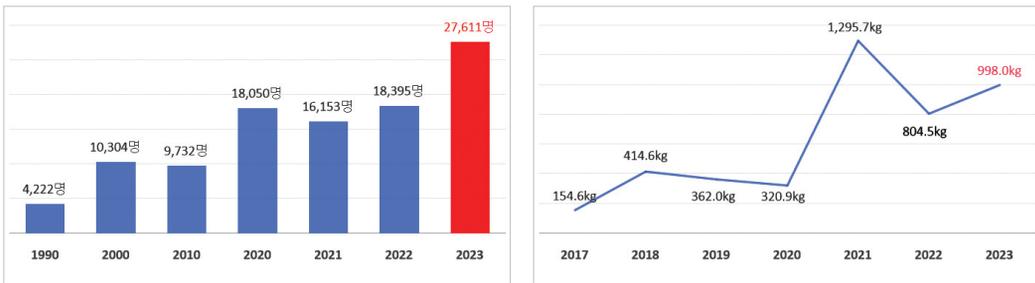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행위에서 일정 가액 이상의 대량의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에는 위 법에 따라 처벌하며, 대마는 제외함

# 4 2023년 검찰의 마약류 범죄 대응

## 1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설치 운영('23. 2.)

### (1) 배경

- ▶ 국내 마약류 사범은 지속적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마약류 압수량 또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국내 마약류 범죄 확산세가 매우 심각한 상황



[그림 1-20] 연도별 마약류 사범 및 마약류 압수량 현황

- ▶ 검찰은 국내 마약류 범죄 확산 원인을
  - ① 해외직구, 다크웹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의 활성화
  - ② 국제 마약조직 및 외국인을 통한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 증가
  - ③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등으로 분석, 각 분야별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마약류 범죄 대응 추진

## (2) 세부 추진 경과

- ▶ [2022년 10월] 국무조정실 주관 ‘마약류 대책 협의회\*에서 검찰, 관세청,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에(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설치 및 운영 계획 발표

### ▶ 마약류 대책 협의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4(마약류대책협의회)

- ①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마약류대책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 국제협력·수사·단속·치료·재활·교육·홍보 등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약류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 ▶ [2022년 11월]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에 마약밀수 및 다크웹 추적 수사 분야의 전문 마약수사직 수사관 11명 추가 배치하여 수사 인력 보강
- ▶ [2023년 2월 21일] 검찰 69명\*, 관세청 6명, 식약처 3명, 지자체(서울·인천·부산·광주) 각 1명씩 총 4명,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명 등 총 84명 4개 팀 규모로 출범



\* 부장검사 4명, 마약 전담 검사 11명, 검찰 마약수사관 54명(다크웹 수사팀 10명 포함)

[그림 1-21]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현판



[그림 1-22]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구성도

- ▶ 각 검찰청 마약수사 전담부서의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전담 검사 및 검찰 마약 수사관과, ① 지역 세관의 공·항만 마약밀수 전문인력(국제 마약밀수 분야)
- ② 식약처와 지자체 보건·의약 전문인력(의료용 마약유통 분야)
- ③ KISA의 마약류 판매광고 사이트 등 차단 및 삭제 전문인력(인터넷 마약유통 분야)로 수사팀 인력 구성

### (3) 주요 활동 및 성과

- ▶ 각 수사팀은 ① 미국 DEA 등 기 구축된 각국의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와 국제 마약조직 DB, 국가정보원의 해외 마약정보 등을 바탕으로, 관세청과 함께 대규모 마약류 밀수에 관한 합동수사를 진행하여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 ② 식약처, 지자체(보건소) 보건·의료 전문인력과 함께 ‘펜타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처방·유통하는 병·의원·약국에 대한 합동수사를 전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펜타닐’, ‘디에타민’ 등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강력 단속, ③ 다크웹·SNS 등 인터넷상 마약류 유통범죄에 대해 검찰 내 ‘다크웹 전담수사팀’ 중심 수사 및 KISA와 함께 마약류 판매 광고의 추적 등을 전개

## 2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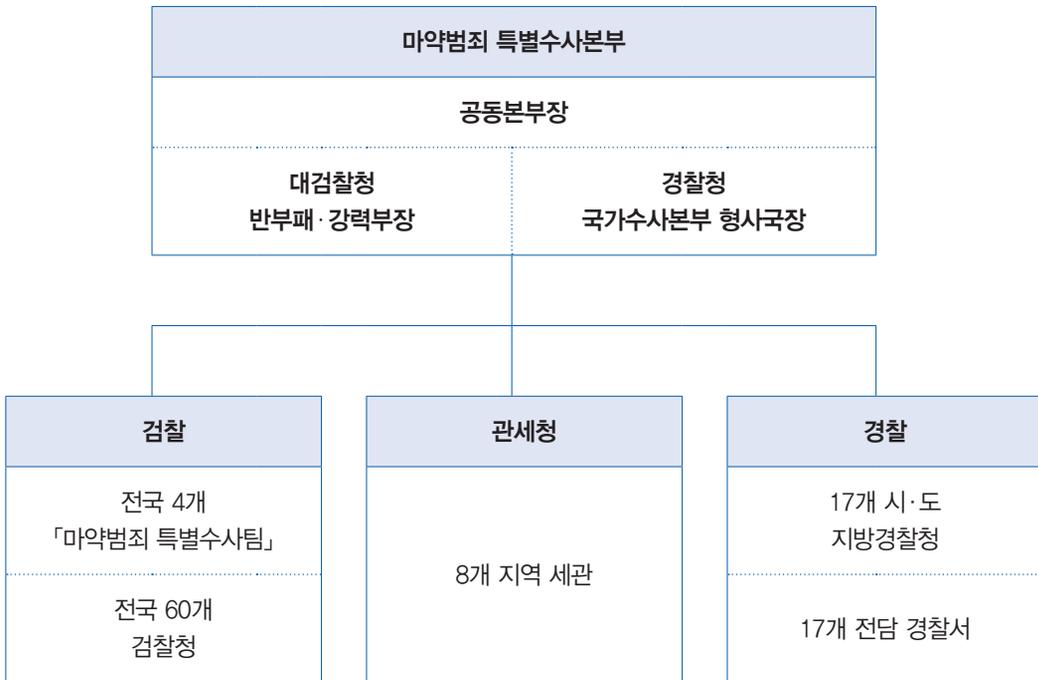
### (1) 배경

- ▶ 온라인 비대면 마약류 거래,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확산으로 마약류가 가정주부, 학생 등 모든 연령 및 계층에 확산하면서 마약류 범죄 뿐만 아니라, 2차 강력범죄 등이 빈발
- ▶ 특히, '23. 4. 중국 내 보이스포싱 조직이 개입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마약류가 함유된 음료를 제공, 이를 복용한 학생 부모에게 금품 갈취를 시도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발생
- ▶ 기존 검찰 내부의 마약범죄 직접수사 부서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설치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의 검찰 및 경찰, 관세청, 교육부, 식약처, 지자체 등 유관기관들의 수사·행정 역량을 결집하여 공동으로 확산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여 마약류 범죄에 공동대응 추진

## (2) 세부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

### 가. 2023년 4월 최초 구성 및 1차 회의

- ▶ 일시 및 장소 : 2023년 4월 10일 대검찰청 중회의실
- ▶ 참석자 :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관세청 조사국장,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국장,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등
- ▶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으로, 검찰·경찰·관세청의 마약수사 전담인력 840명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구성
  - (검찰) 전국 60개 검찰청 마약전담검사, 마약전담수사관 등 총 377명
  - (경찰)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마약수사 전담인력 등 총 371명
  - (관세청) 전국 공·항만 마약류 밀수 전담 수사인력 총 92명



[그림 1-23]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체계

- ▶ 유관기관간 신속 정보 공유 및 적시 공동 대응 추진
  - 마약류 범죄에 대해 수사착수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 마약수사 전담인력의 공동대응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
  - 마약류 사건에 대한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마약 전담검사가 전속 처리함으로써, 영장청구, 피의자 검거, 사건처리 등 마약류 범죄 수사 전 단계에서 ‘빈틈없는 수사’ 추진
  -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전국 6대 권역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17개 지방경찰청·전담경찰서로 확대
  - 예방·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단서에 대하여 즉각적 수사의뢰와 신속한 수사 착수가 가능토록 유관기관과 핫라인 구축
  
- ▶ 미성년자(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 적극 대응 및 예방
  - 청소년 상대 마약류 공급사범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중처벌 적극 의율 및 구속수사 원칙
  - 피해 청소년에 대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적용하여 피해사례 접수시 적극 지원
  - 학교 및 학원가 주변 CCTV 24시간 모니터링 강화 및 ‘신종유형 발생경보 시스템’<sup>9</sup> 가동하여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 피해 예방
  - 미성년자 눈높이에 맞는 마약류 예방 교육·홍보 실시



[그림 1-24]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구성 발표

<sup>9</sup> 청소년 대상 신종범죄 발생시 교사, 학부모에게 신속하게 전파하여 범죄예방 및 상황 전파

## 나. 2023년 6월 참여기관 확대 및 2차 회의

- ▶ 일시 및 장소 : 2023년 6월 14일 대검찰청 소회의실
- ▶ 참석자 :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관세청 조사국장,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국방부 검찰단장, 조사본부장 등 17명
- ▶ 대검찰청 조직 개편\*으로 공동본부장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으로 변경하고, 기존 검찰·경찰·관세청에 국방부, 해양경찰청, 국정원이 추가로 합류하여 기존 전담인력 840명에서 974명으로 확대
  - \* 2023년 5월 23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신설
  - (국방부) 국방부 및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소속 군검찰 25명, 군사경찰 23명 등 총 48명
  - (해경) 전국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소속 전담 수사 인력 총 86명



[그림 1-25]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2차 회의

### ▶ 투약사범에 대한 처벌과 치료·재활의 병행

- 밀수·밀매 등 마약류 유통사범 외 투약사범에 관대한 시선으로 인한 사회적 경각심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마약류 범죄 감소를 위해서는 마약류 공급 단속과 함께 마약류 수요 억제도 필요
- 초범인 투약사범에 대하여도 구공판 처분 원칙으로 하고, 재범 이상인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수사를 원칙
- 투약사범의 단약 의지, 상습투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치료감호, 치료명령 등 치료·재활 프로그램 적극 활용

### ▶ 군(軍) 내 마약류 범죄 예방 및 군 수사기관의 마약류 범죄 수사 역량 강화

- 주 구성원이 청년층인 군 내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단체생활을 하는 군 특성상 군 내 마약류 범죄는 확산세가 더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마약류 투약으로 인해 총기류 등 살상무기로 인한 2차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군 장병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 실시
- 군사경찰, 군검찰 등 군 수사기관의 마약류 범죄에 대한 1차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 연내 지속적인 군 수사기관 대상 마약수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다. 2023년 12월 특수본 3차 회의

- ▶ 일시 및 장소 : 2023년 12월 6일 대검찰청 소회의실
- ▶ 참석자 :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관세청 조사국장,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국방부 검찰단장, 조사본부장,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장 등 19명



[그림 1-26]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3차 회의

➤ 2023년 4월 특수본 구성 이후 수사성과 분석 및 향후 운영계획 논의

〈특별수사본부 내 지역별 수사실무협의체 주요 수사사례〉

- 해외 체류 선교사, 교회 목사 등 종교인의 선의를 이용하여 태국에서 아바 16,000여 정을 밀수입한 외국인 밀수사범 4명 구속 기소[’23. 8. 청주지검, 국정원, 관세청]
- 약 2년 동안 ‘바디패커’ 등을 이용하여 케타민 총 17.2kg을 밀수입한 4개 밀수조직에 대한 합동수사를 통해 27명 검거 및 기소(25명 구속)[’23. 8. 인천지검, 인천공항본부세관]
- 태국발 케타민 등 마약류 총 30kg을 밀수입하여 전국에 유통한 마약 밀수·유통 조직원 27명 검거 및 기소(20명 구속)[’23. 11. 영월지청, 평창경찰서]
- 말레이시아발 필로폰 12kg을 선물용 차로 위장하여 여행용 가방에 은닉한 후 제주공항으로 밀수입한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 2명 구속 기소[’23. 12. 제주지검, 제주세관]

➤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 대응방안 논의

- (불법 공급 사범 엄단) 의료용 마약류 밀수, 밀매 등 공급사범은 무관용 원칙 적용하여 구속수사 원칙 및 의료인의 과잉·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 원인행위 철저 차단 추진
- (상습투약자 엄벌) 의료용 마약류 중독자는 초범이어도 구공판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누범·집행유예 기간중 재범자는 구속수사를 통한 사회와의 격리 및 재범방지
- (영리 목적 마약류 과다 처방 병원 및 의료인 엄단) 의료인의 목적 외 의료용 마약류 사용으로 중독자를 양산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이후 의료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유통한 경우 초범이더라도 사안에 따른 구속수사 검토

- 식약처 주도하에 검찰·경찰·지자체·복지부 등과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과다처방, 과다투약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우려 의료기관 대상 합동단속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추진

####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주요 수사사례〉

-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을 통해 추간판탈출증 등을 병자하여 총 575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 7,655매를 매수한 피의자 구속기소 및 펜타닐 패치를 처방한 의사 2명 기소(1명 구속)[23. 4. 서울중앙지검, 식약처]
-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의료용 마약류 대량 처방 의료기관의 처방 내역 분석을 통해 11개 의료기관에서 메틸페니데이트가 함유된 ADHD 치료제 8,916정을 208회에 걸쳐 처방받아 매수한 피의자 구속기소(부산지검, 식약처)

#### ▶ 서울지역 유흥시설 내 마약수사 및 단속협약서 체결

- 클럽·유흥주점 등의 유흥시설이 국내 마약류 범죄 확산의 온상으로 지목
- 유흥시설 내 마약류 범죄가 발생할 경우 검찰-경찰-서울시간 해당 업소 정보 공유를 통한 신속한 수사와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한 기관 간 합동점검 지원



[그림 1-27] 검찰-경찰-서울시 업무협약 체결식

## 3

## 「전국 18대 지검 마약 전담 부장 검사 및 마약수사과장 회의」 개최

### (1) 개최 배경

- >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출범에 따른 수사상황 점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확대로 인한 수사정보 공유 및 대응태세 점검
- > 지역별 ‘마약수사 실무협의체’ 구축을 통한 청소년 치료·재활 및 예방홍보 강화 방안 등도 동시에 추진

### (2) 회의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3년 5월 8일 대검찰청 대회의실
- > 참석자 : 검찰총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전국 18대 지검 마약수사 전담부서 부장검사, 전국 마약수사과장 등 26명



[그림 1-28] 회의 사진

### (3) 주요 내용

#### > (마약류 범죄 엄단결의)

마약류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고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고, 청소년 대상 마약류 공급 사범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가중 처벌 조항을 적용하고 양형 기준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등의 엄단 방안 논의

#### > (수사정보 공유 및 검찰 대응 태세 점검)

- 2021년 1월 1일부터 검찰은 가액 500만원 이상의 밀수범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수사개시가 가능하였으나, 2022년 9월 10일부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직접 수사범위 확대에 의한 수사정보 공유 및 최신 수사기법 전파
- 마약류 범죄 대응에 컨트롤 타워 역할 마약류 범죄 대응에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하고, 마약·조직범죄과를 마약과와 조직범죄과로 분리하여 검찰의 마약류 범죄 대응 태세 점검

#### >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기회 적극 제공)

- 청소년·초범 투약사범에 대하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마약류 중독정도 및 재활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맞춤형으로 조건부(치료·선도·교육) 기소유예 처분을 통한 치료·재활 기회 제공
-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중독자에게도 사안에 따른 중독성 입증을 통해 치료감호 청구

\* 치료감호 : 마약류 중독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치료감호소에 수용하여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

- 기소된 투약사범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가하도록 재판부에 의견 적극 제출



## 4 전국 마약전담검사 및 마약수사관 워크숍 개최

### (1) 개최 배경

- ▶ 2023년 6월 26일 제37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① 마약범죄 최신 경향·정보·수사사례 공유, ② 마약범죄 사건처리기준 정비 및 처벌 강화를 통해 마약범죄에 엄정대처 목적으로 검찰 내 마약전담 검사 및 마약수사관 대상 워크숍 개최

### (2) 회의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3년 6월 23일 대검찰청 NDFC
  - ▶ 참석자 : 전국 21개 검찰청 마약전담검사 17명, 공판검사 4명\*, 마약수사직 수사관 50명 등 총 83명
- \*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설치 4개 검찰청 마약전담재판부 담당 공판검사



[그림 1-30] 2023 마약수사 역량강화 워크숍

### (3) 주요 논의 사항

- ▶ 다크웹·SNS 등 새로운 마약류 공급망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
  - 익명성, IP 우회 등을 이용한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로 젊은층에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어, 투약자를 검거하더라도 상선 및 공급망까지의 수사가 어려운 상황으로 수사 노하우 공유 및 신종수사기법 개발 등을 통한 자체 수사역량 강화 추진
  
- ▶ 마약류 범죄 검찰 사건처리 기준 개정
  - ①범죄유형, ②마약류 종류 및 취급량, ③동종전력, ④상습성·영리목적, ⑤가중처벌 결정인자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처벌 기준을 강화
  - 마약류 밀수, 밀조, 밀매 등 공급사범은 무관용 원칙 적용하여 초범이어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출처를 함구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구형 상향
  - 미성년자 대상 영리 목적 마약류 공급사범은 사형까지 구형
  - 상습, 반복 투약 범행임에도 혐의 부인하고, 마약류 유통 경로에 대하여 묵비하거나, 증거인멸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구속수사
  - 단순 투약사범도 기소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재범이상인 경우 구속수사 원칙
  - 엄중한 처벌을 통한 재범방지를 위해 구형기준을 강화하고 재판과정에서 적극적 상소권 행사

## 5 2023년 주요 검찰 마약류 범죄 수사사례

※ 기재한 일자는 검찰 처분 날짜 기준

### ◎ 시가 1,650억원 상당의 필로폰 50kg 밀수 조직 사건(부산지검, '23. 2.~6.)

#### ▶ 피의자 및 범죄사실

- 사건개요 : '22. 12. 태국에서 필로폰 약 50kg을 팔레트<sup>10</sup> 7개에 은닉하고 한국행 선박화물로 발송하여 부산항에 도착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고, '23. 1. 까지 대구 수성구 인근 빌라에 보관
- A ('23. 1. 담배 밀수혐의로 별건 구속 기소) : 부산에 도착한 필로폰을 대구 모처 빌라로 운반
- B : 부산에 도착한 필로폰을 대구 모처 빌라로 운반
- C : 부산에 도착한 필로폰을 대구 모처 빌라로 운반
- D : 본건 팔레트 통관절차 진행
- E : 운반 비용, 관세사 비용 등 송금, 필로폰 은닉 도구 등을 처리
- F (부산 북구 폭력조직 ○○파 두목) : 밀수자금 제공 및 밀수 필로폰 국내 유통
- G ('22. 10. 튀르키예로 출국) : 태국에서 필로폰 은닉 및 발송
- H ('22. 11. 호주로 출국) : 태국에서 필로폰 은닉 및 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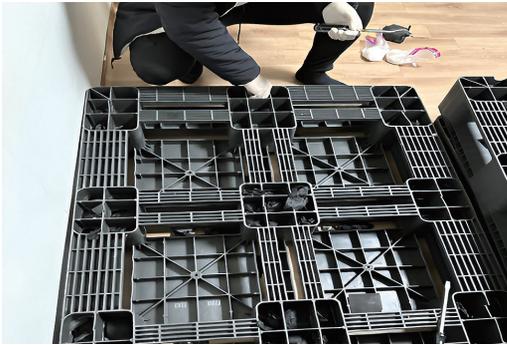
#### ▶ 수사경과

- '23. 1. 대구 소재 빌라에서 팔레트 7개에 은닉된 필로폰 50kg 긴급 압수
- '23. 1. 수사 착수 및 A,B,C 인지
- '23. 2. B, C 검거 및 구속(A는 별건 구속 중)
- '23. 2. A(불구속), B(구속), C(구속) 각 기소
- '23. 2. ~ 3. B, C에 대한 조사를 통해 D, E 인지 및 D 구속
- '23. 4. D(구속), E(불구속) 각 기소
- '23. 4. ~ 5. 주거지 압수수색, 핸드폰 포렌식, 계좌분석 등을 통해 F, G, H 인지
- '23. 5. 관세청 협조로 국내로 입국하는 F 검거 및 마약류 소지 혐의 추가 인지
- '23. 6. F 구속 기소 및 G, H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

<sup>10</sup> 목재나 플라스틱 재질 화물 운반대로 수출입 물품의 선적에 주로 사용



[그림 1-31] 압수 현장 및 압수한 필로폰



[그림 1-32] 선박 화물용 팔레트에 은닉된 모습

➤ 수사 의의

- 담배 밀수 혐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50kg을 긴급 압수하고,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밀수조직 조직원 8명을 인지하고 밀수자금을 제공하고 국내 유통을 담당하는 폭력조직 두목까지 검거

- B, C 구속 이후 관련 물류회사, 관세사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하여 피의자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이후, 쓰레기통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밀수입한 정황을 규명

\* 피의자들은 본건 밀수 이전에 같은 방법으로 소규모 밀수를 시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본건 범행

➤ 국내 유통조직원 외 해외 체류하고 있는 총책 2명을 특정하여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이후 계속 추적 중

## ◎ 충북지역 태국·라오스발 야바 대량 밀수 사건(청주지검, '23. 3.)

### ▶ 피의자 및 범죄사실

- A, B\*(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 '23. 1. 라오스발 국제특급우편에 야바 36,000정을 각 200정씩 180개의 소형 지퍼백에 소분한 후 목재 및 플라스틱 재질의 2단 수납장 벽면 내부에 은닉하고 이를 기타 물품과 함께 포장하여 국내로 밀수입

\* A, B는 부부관계

- C(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D\*(태국 국적 노동자) : '23. 2. 총 2회에 걸쳐 태국발 국제소포우편에 각 야바 16,102정, 야바 16,072정을 각 200정씩 소형 지퍼백에 소분하고 이를 금박지로 재포장하여 선물상자 및 약통에 은닉하여 포장하여 국내로 밀수입

\* C, D는 친구사이

### ▶ 수사경과

- '23. 1. 라오스발 항공기 수화물에 야바 36,000정을 은닉하여 밀수입
- '23. 2. 마약류를 밀수입한 A와 위 마약류를 수령하려다 미수에 그친 B를 함께 검거하여 함께 구속 기소
- '23. 2. 태국발 국제우편물에 2회에 걸쳐 야바 총 32,174정(16,102정, 16,072정)을 은닉하여 밀수입
- '23. 2. 마약류를 수령하려한 C를 먼저 체포한 이후, 실시간 위치추적 및 장기간 잠복수사를 통해 D까지 검거
- '23. 3. C, D 구속 기소



[그림 1-33] 압수한 야바

## ◎ 10대 청소년이 가담한 마약류 대량 유통조직 사건(수원지검, '23. 3.)

### ▶ 피의자 및 범죄사실

- A(보관책) '22. 7. 총책지시에 따라 태국에서 밀수된 MDMA 479정을 수령하고 야바, LSD, 대마 등 대량의 마약류를 소지
- B, C(보관책) '22. 7. 총책지시에 의해 야바, 케타민, 합성대마, 액상대마 등의 마약류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
- D, E(배달책) '22. 11. 총책지시에 의해 판매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고, 이후 액상대마, 케타민, 대마초 등의 마약류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
- F, G, H(도매상) '22. 10.~12. 합성대마, MDMA를 마약류 판매조직에 공급하고 이후에도 판매할 목적으로 합성대마, MDMA 소지
- I(배달책) '22. 12. 총책지시에 의해 합성대마를 수수하고, 이후 MDMA, 케타민, 합성대마, 대마초, LSD 등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
- J, K, L, M(배달책, 모두 10대 청소년) '22. 12. 총책지시에 의해 합성대마를 수수하고, 이후 MDMA, 케타민, 합성대마, 대마초, LSD 등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

- '22. 9. 수원지검, MDMA 밀수사건 수사 착수하여 마약류 보관책(창고장) A 체포 및 구속 기소 (A 주거지에서 야바 670정, 액상대마 2.1kg 등 판매 목적 마약류 압수)
- '22. 11.~12. A로부터 마약류를 전달받아 보관한 보관책 2명(야바 689정, 케타민 51.46g 압수)과 소분하여 판매한 판매책 2명 등 총 4명(B, C, D, E) 구속 기소
- '23. 1. 대량의 마약류를 위 판매조직에 공급한 마약류 도매상 3명(F, G, H) 구속 기소
- '23. 2. 위 판매조직에서 총책의 지시에 따라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판매책 5명(4명이 10대 청소년) 인적사항 특정 후 검거하고 판매목적의 다량의 마약류(MDMA 483정, 케타민 265.2g, 합성대마 3.3L, 농축대마 450g, 대마초 522.21g, LSD 162장, 필로폰 6.31g) 압수
- '23. 3. 판매책 5명(I, J, K, L, M) 구속 기소

## ▶ 수사 의의

- 디지털 포렌식, 최신 영상장비 등 과학수사 역량과 유관기관과의 ‘마약수사 실무협의회’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 최근 텔레그램 등 보안메신저의 익명성, 비대면성을 이용한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가 증가하고, 젊은층의 유통범죄 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밀수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장하여 마약류 밀수 및 유통 조직 전반을 붕괴시켜 국내 마약류 유통을 사전 차단함

## ◎ 국내 최초 마약류 및 총기류 동시 밀수 사건(서울중앙지검, '23. 4.)

### ▶ 피의자 및 범죄사실

- A(미국 영주권자로 LA 등지에서 마약판매상으로 활동) : '22. 7. 미국 LA 소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3.2kg을 9개의 비닐팩에 진공포장하여 소파테이블 안에 은닉하고, 45구경 권총<sup>11</sup>과 실탄 50발을 공구함 등에 분산·은닉한 후 이삿짐으로 위장한 다음, 선박화물로 발송하여 부산항에 도착하게 하여 밀수입

### ▶ 수사경과

- '22. 12. 대검찰청 관련 첩보 입수
- '23. 3. 미국 DEA와 공조하여 첩보 관련 내용 및 피의자 정보 파악
- '23. 3. 주거지 압수수색(필로폰 약 3.2kg 및 총기, 실탄 압수) 및 긴급체포
- '23. 4. 구속 기소 및 DEA와 공조하여 해외 연계 조직 계속 수사 중

<sup>11</sup> "Rock Island Armory M1911-A1" : 필리핀 Arm Scor사 제조, 유효사거리 100m의 살상용 권총



[그림 1-34] 총기, 마약류 등 전체 압수물

### > 수사 의의

- 피의자는 미국 LA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전문 마약판매상으로 최초 첩보 입수부터 DEA와 공조하여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세관·경찰과 협조를 통해 신속한 주거지 수색을 통하여 밀수한 필로폰과 총기를 압수하고 피의자 긴급체포 및 구속
- 마약류와 총기를 동시에 밀수하여 적발된 최초의 사건으로, 마약류 국내 대량 유통을 차단함은 물론 자칫 강력 사건 또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총기사고를 사전에 방지
-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미국 내 필로폰 공급책에 대한 정보 및 수사단서를 DEA와 공유하여 미국 내 공조수사 진행

## ◎ 경남 지역 야바 대량 밀수 사건(창원지검, '23. 5.)

### ▶ 피의자 및 범죄사실

- A(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 '22. 12. 태국으로부터 야바 약 57,930정(5,086.3g)을 랩으로 감싼 후 은박지로 재포장하고 태국가공식품으로 위장하여 국제특급 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 ▶ 수사경과

- '22. 12. 우편물 수취지(경남 김해) 관할 창원지검 수사 착수
- '23. 1. 피의자 도주 및 잠적
- '23. 1. ~ 4. 참고인 진술, 통신내역 등 추적하여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소재 추적
- '23. 4. 충북 청주에서 피의자 검거
- '23. 5. 구속 기소

### ▶ 수사 의의

- 밀수된 마약류를 수령하지 않고 도주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를 약 4개월 동안 끈질기게 추적하여 신원을 특정하여 검거하고 시가 10억 원이 넘는 경남 지역 대규모 마약류 유통을 사전차단
- 태국에서 한국으로 마약류를 발송한 판매 총책에 대해 태국 마약청(ONCB)과 공조수사를 통해 소재 추적 중



[그림 1-35] 태국 가공식품으로 위장하여 밀수입한 야바

## ◎ 고등학생이 주도한 케타민 대량 밀수 사건(인천지검, '23. 5.~6.)

### > 피의자

- A (18세, 고등학교 3학년) : C에게 사례금을 받기로 하고, 수취지 정보 제공 및 직접 마약류 수령
- B(31세, 무직) : C에게 사례금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연락처 및 개인통관고유부호 제공하고 배송추적 및 관세 납부 등 전과정 관리
- C(18세, 고등학교 3학년) : A와 B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독일 소재 공범에게 제공하여 독일에서 케타민 2.9kg을 밀수입

### > 범죄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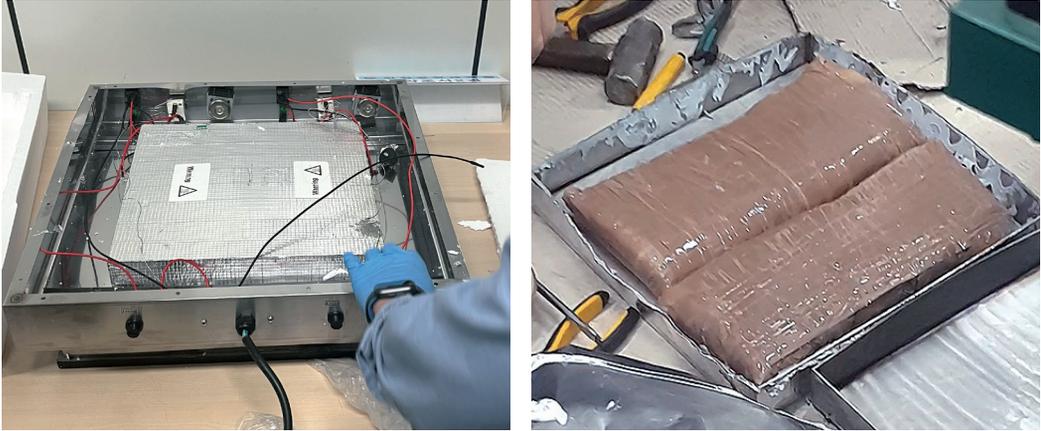
- '23. 5. 독일에서 팬케이크 메이커 기계에 케타민 2.9kg을 은닉하여 항공화물로 국내로 밀수입

### > 수사경과

- '23. 5. 독일세관, 케타민 적발 및 한국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은 인천공항본부세관을 통해 인천지검에 공조수사 요청
- '23. 6. A, B 검거 및 구속 기소
- '23. 6. C 인적사항 특정 및 여권무효화,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를 통한 C 소재 파악 및 추적
- '23. 7.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C 검거 및 구속 기소

### > 수사 의의

- 독일세관, 인천공항본부세관, 인천지검 등 유관기관간의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한 신속한 수사착수와 국내 공범들에 대한 면밀한 수사로 본건 밀수범행을 주도한 C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후 약 한달만에 전체 조직원을 모두 검거하여 구속 기소
- 태국에서 한국으로 마약류를 발송한 판매 총책에 대해 태국 마약청(ONCB)와 공조수사를 통해 소재 추적 중



[그림 1-36] 팬케이크 메이커 기계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케타민

### ◎ ‘좀비 마약’ 펜타닐 불법 대량 처방 사건(서울중앙지검, '23. 6.)

#### ➤ 피의자 및 범죄사실

- A (가정의학과 의사) : '20. 11.~'23. 4. C에 대하여 총 304회에 걸쳐 업무 외 목적으로 펜타닐 패치제 총 4,826매에 해당하는 처방전 발급
- B (정형외과 의사) : '21. 6.~'21. 11. C에 대하여 총 56회에 걸쳐 업무 외 목적으로 펜타닐 패치제 총 686매에 해당하는 처방전 발급
- C\* (환자) : '20. 1.~'23. 4.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16개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제 총 7,655매를 처방 받아 매수
  - \* 약국에서 1매당 1.5만원에 구입한 펜타닐 패치를 1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중 범행

#### ➤ 수사경과

- '23. 3. 식약처와 합동으로 최근 3년간 펜타닐 패치 처방 내역을 분석하여 상위 50개 병원 선별
- '23. 4. 위 병원에서 허위로 상습·대량으로 처방 받은 C를 특정, 구속 기소
- '23. 4. C에게 비대면 진료 및 펜타닐 패치 대량 처방한 관련 병·의원 2곳 특정하여 압수수색
- '23. 6. A와 B의 혐의사실을 명확히하여 모두 구속 기소

### ▶ 수사 의의

-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를 활용, 최근 3년간 서울에서 1인당 권고량을 초과하여 펜타닐 패치를 처방한 42개 병·의원\* 처방 실태를 분석, 주로 20~30대 연령층에서 일부 특정 환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처방된 사실을 확인
  - \* 42개 병·의원의 1인당 평균 처방 매수는 ('20.) 156매 ('21.) 198매 ('22.) 153매
- 펜타닐에 중독된 환자들의 말만 듣고 직접 진찰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펜타닐 패치를 처방한 의사를 적발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조장 사례 엄단

## 6 2023년 검찰 주요 마약류 대량 밀수 수사사례

- ▶ 수 백만원의 대가를 약속하고 20대 남성들을 고용하여 22. 1.부터 23.1.까지 총 6회에 걸쳐 태국에서 케타민 10kg을 밀수한 전문 밀수조직 적발하여 7명(20대 6명, 30대 1명)에 대하여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하여 구속 기소(1월, 서울중앙지검)
- ▶ 태국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야바 24,121정을 밀수입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4명 구속 기소(1월, 광주지검)
- ▶ 태국발 항공기의 기내 수하물에 야바 19,369정을 은닉하고 휴대하여 김해공항을 통해 밀수입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3명 구속 기소(1월, 부산지검)
- ▶ 태국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필로폰 2.3kg 밀수한 인천지역 폭력조직 '○○식구파' 조직원 1명 구속 기소(2월, 인천지검)
- ▶ 별건 마약류 밀수입 범행으로 교도소 수감중인 태국인 밀수사범들이 태국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필로폰 4kg 및 야바 14,109정 밀수범행을 추가로 밝혀내 공범 1명을 검거하여 총 3명(1명 구속) 기소(2월, 청주지검)

- ▶ 필로폰 2.2kg을 캐리어에 은닉하고 수하물로 기탁한 후 남아프리카공화국발 항공기에 탑승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입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인 1명 구속 기소(2월, 인천지검)
- ▶ 태국에서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화물의 운반대에 필로폰 약 50kg을 은닉하여 밀수입한 3명(2명 구속) 기소(2월, 부산지검)
- ▶ 라오스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야바 36,000정을 밀수입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부부 2명 구속 기소(2월, 청주지검)
- ▶ 필로폰 약 4kg을 소분하여 허벅지, 허리, 배 등에 두르고 테이프로 붙인 다음 말레이시아발 항공기에 탑승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입한 말레이시아인 1명 구속 기소(2월, 인천지검)
- ▶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와 공조하여, 필로폰 2.8kg을 여러 개의 작은 풍선안에 은닉하여 멕시코에서 미국을 거쳐 화물로 밀수입한 밀수사범 1명 구속 기소(2월, 인천지검)
- ▶ 총 2회에 걸쳐 야바 합계 32,147정을 태국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한 태국인 2명(1명 불법체류자) 구속 기소(3월, 청주지검)
- ▶ 필로폰 7.2kg을 소분, 비닐포장하여 신체에 테이프로 붙이고 말레이시아발 항공기에 탑승하여 밀수입한 운반책 2명과 감시책 1명 등 말레이시아인 3명 구속 기소(3월, 서울중앙지검)
- ▶ 미국 마약청(DEA)와 공조하여, 미국에 거점을 둔 국제마약밀수 조직이 개입하여 총 2회에 걸쳐 미국발 국제우편을 이용해 필로폰 약 2.2kg을 밀수입한 4명 구속 기소(4월, 인천지검)
- ▶ 미국 마약청(DEA)와 공조하여, 필로폰 3.2kg 및 실제 총기를 밀수입한 미국 전문 마약판매상 밀수사범 1명 구속 기소(4월, 서울중앙지검)

- ▶ 태국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야바 24,179정 및 케타민 3.5kg을 밀수입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1명 및 수거책 2명 등 총 3명 구속 기소(5월, 광주지검)
- ▶ 태국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야바 5kg을 밀수입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1명 구속 기소(5월, 창원지검)
- ▶ 필로폰 8.2kg을 여행용 캐리어 안에 은닉하고 수하물로 기탁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항공기에 탑승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입한 싱가포르인 1명 구속 기소(5월, 인천지검)
- ▶ 미국 마약청(DEA)와 협력하여 코카인 5.5kg을 서류가방 및 여행용 캐리어에 은닉하고 수하물로 기탁하여 브라질발 항공기에 탑승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입한 스페인인 1명 구속 기소(6월, 인천지검)
- ▶ 독일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케타민 2.9kg을 밀수입한 고3 밀수사범 1명이 포함된 총 2명 구속 기소(6월, 인천지검)
- ▶ 필로폰 14kg을 푸딩 포장재 안에 은닉하여 말레이시아발 항공기 수하물에 기탁하고 김해공항을 통해 밀수입한 말레이시아인 1명 구속 기소(6월, 부산지검)
- ▶ 독일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MDMA 11,001정을 밀수입한 밀수사범의 이전 MDMA 425정, 케타민 420g 밀수 범행도 밝혀내어 총 3명의 베트남인 불법체류자 구속 기소(6월, 대전지검)
- ▶ 미국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필로폰 4.8kg을 분유통 안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밀수사범 1명 구속 기소(7월, 인천지검)
- ▶ 필로폰 14.1kg을 여행용 캐리어 안에 은닉하고 수하물로 기탁하여 캐나다발 항공기에 탑승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입한 중국인 2명 구속 기소(7월, 인천지검)
- ▶ 일정 대가를 받고 백팩 안에 은닉된 필로폰 2.9kg을 캄보디아발 항공기에 탑승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입한 말레이시아인 1명 구속 기소(8월, 인천지검)

- ▶ 태국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야바 7,979정을 밀수입한 태국인 노동자 1명 구속 기소(9월, 의정부지검)
- ▶ 코카인 4.2kg을 비누로 위장하여 캐리어에 은닉하고 수하물로 기탁하여 브라질발 항공기에 탑승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입한 밀수사범 1명 구속 기소(9월, 인천지검)
- ▶ 태국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야바 5,950정을 밀수입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2명 구속 기소(9월, 울산지검)
- ▶ 필로폰 5kg을 여행용 캐리어 안에 은닉하고 수하물로 기탁하여 말레이시아발 항공기에 탑승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입한 말레이시아인 1명 구속 기소(10월, 인천지검)
- ▶ 메스케치논 유사체 5.4kg을 애견사료 포장봉투에 은닉하여 홍콩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한 밀수사범 2명 구속 기소(11월, 인천지검)
- ▶ 라오스발 국제우편물을 이용하여 필로폰 2.9kg을 밀수입한 15세 미성년자 수령책 등 중국인 2명 구속 기소(12월, 인천지검)